KOSHA GUIDE D - 23 - 2012

# 저장탱크의 형식선정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7.

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

##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김 기 영

ㅇ 개정자 : 한 인 수

- o 제·개정경과
  - 1996년 12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 - 1996년 12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 - 2002년 6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 - 2002년 8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 - 2012년 7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 - 대기환경보전법
  - 미국 EPA 기준
  - 엔지니어링사 표준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2장 제4절 (화학설비·압력용기 등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 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7월 18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# 저장탱크의 형식선정에 관한 기술지침

##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2 장 제4절(화학설비·압력용기 등)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 및 주위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내에 설치되는 저장탱크의 형식선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작업환경 및 주위환경에 영향을 주는 위험물질을 저장하는 탱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상압저장탱크"라 함은 게이지 압력으로 3.43kPa(350mm $H_2O)$ 미만의 압력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를 말한다.
  - (나) "고정식 지붕탱크(Cone or fixed roof tank, CRT)"라 함은 원추형으로 된 고정식 지붕을 가지고 있는 상압저장탱크를 말한다.
  - (다) "부유식 지붕탱크(Floating roof tank, FRT)"라 함은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된 부유식 지붕을 가지고 있는 상압저장탱크를 말한다.
  - (라) "저압저장탱크"라 함은 게이지 압력으로 3.43kPa(350mmH<sub>2</sub>O) 이상 및 98.1kPa(1kg/cm<sup>2</sup>)미만의 압력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를 말한다.

KOSHA GUIDE D - 23 - 2012

- (마) "압력저장탱크"라 함은 게이지 압력으로 98.1kPa(1kg/cm²)이상의 압력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를 말한다.
- (바) "증기처리설비(Vapor treatment system)"라 함은 저장용기 내부의 증기를 대기중으로 직접 방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장 용기에 연결하여 연소·흡수·세정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설비를 말한다.
- (사) "압력방출장치 등"이라 함은 저장 용기내부에 형성된 압력을 외부로 방출 또는 유입시킬 수 있는 과압방지장치 및 진공방지장치를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4. 형식 선정

저장탱크의 형식선정은 <표 1>의 선정기준에 의한다.

<표 1> 저장탱크의 형식 선정기준

운전온도에서의 증기압 (P)	탱크의 용량	
	150 m³ 이하	150 m³ 초과
$P \le 5.2 \text{ kPa}$ $(P \le 0.053 \text{ kg/cm}^2)$ $(P \le 0.75 \text{ psi})$	고정식 지붕탱크	고정식 지붕탱크
$\begin{array}{l} 5.2 \text{ kPa} < P \leq 27.7 \text{ kPa} \\ (0.053 \text{ kg/cm}^2 < P \leq 0.282 \text{ kg/cm}^2) \\ (0.75 \text{ psi} < P \leq 4.0 \text{ psi}) \end{array}$	고정식 지붕탱크	부유식 지붕탱크 또는 고정식 지붕탱크와 증기처리설비
$\begin{array}{l} 27.7 \text{ kPa} < P \leq 76.7 \text{ kPa} \\ (0.282 \text{ kg/cm}^2 < P \leq 0.782 \text{ kg/cm}^2) \\ (4.0 \text{ psi} < P \leq 11.1 \text{ psi}) \end{array}$	부유식 지붕탱크 또는 고정식 지붕탱크와 증기처리설비	부유식 지붕탱크 또는 고정식 지붕탱크와 증기처리설비
$\begin{array}{l} 76.7 \text{ kPa} < P \leq 98.1 \text{ kPa} \\ (0.782 \text{ kg/cm}^2 < P \leq 1 \text{ kg/cm}^2) \\ (11.1 \text{ psi} < P \leq 14.2 \text{ psi}) \end{array}$	저압저장탱크 또는 고정식 지붕탱크와 증기처리설비	저압저장탱크 또는 고정식 지붕탱크와 증기처리설비
98.1 kPa < P (1 kg/cm <sup>2</sup> < P) (14.2 psi < P)	압력저장탱크	고압저장탱크

KOSHA GUIDE D - 23 - 2012

### 5. 압력방출장치 등의 설치

- (1) 모든 저장 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압력방출장치 등의 전 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안전보건규칙 제266조 (차단밸브의 설치 금지) 단서 조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(2) 증기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압저장탱크 내부의 압력이 설계압력 이하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3) 증기처리설비와 상압저장탱크 사이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. 다만, 차단밸브가 잠긴 상태에서 상압저장탱크의 내부에 압력이 형성되지 않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